

증오언설에 관한 여당 법안을 수정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률이 성립되기를 요구하는 성명

올해 4 월 8 일 자민·공명 양당에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 법안")이 참의원에 제출되었다.

증오언설은 인종·민족의 차이 등을 주된 이유로 "죽여라", "바퀴벌레", "가스실로 보내라" 등을 도로상에서 공개적으로 외치며 그 실행을 종용하는 것이며,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인종·민족을 가지고 차별하여 열등하고 보호할 가치도 없는 어떻게 취급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차별 의식을 널리 만연하도록 한다. 헌법 13 조가 보장하는, 차별 대상이 된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 14 조에 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체 생명에 가해하는 증오범죄와 쉽게 결합하여 심지어는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증오언설이 초래하는 해악은 너무나도 심각하다.

최근 일본에서도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오언설이 심히 창궐하여 대처하는 법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금번에 여당이 본 법안을 마련하였다. 물론 인종차별·민족차별, 그중에서도 제일 조선·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은 일본에서 가장 큰 인권 문제 중 하나로 계속 존재하고 있으나, 인종차별철폐조약에 일본이 가맹하여 20 년 이상, 전후 70 년 이상, 식민지화부터 100 년 이상을 거쳐 인종차별·민족차별에 대한 대처를 정면부터 과제로 삼는 법안을 여당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너무 늦었기는 하더라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종차별과 맞서온 시민과 운동의 성과이다.

그러나 본 법안은 적어도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 본 법안은 증오언설의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히고 있다. 본 법안은 대상자를 "오로지 일본의 역외에 있는 나라 또는 지역 출신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라고 정의한다.(제 2 조) 이렇게 하면 재류 자격없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외국인, 피차별 부락, 아이누, 심지어 류큐·오키나와 등 일본 국내의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언설은 본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보인다. 그러나 증오언설 등의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와 같이 그가 인종적·민족적 속성 등을 이유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짓밟는 짓이기 때문이다. 이에선 체류의 적법 여부나 출신지가 일본 국내인지 국외인지 라는 구별을 도입할 여지가 없다.

다음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정의(제 2 조)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가해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인종·민족의 차이에 따른 모멸, 멸시, 악질 루머 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본 법안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 3 조)라며 국민·시민에 대해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벌칙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법률이 증오언설 방지를 위한 실효적 법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금지"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본 법안이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를 노력 의무에 그치도록 하는 부분(제 4 조 내지 제 7 조)도 문제이다. 벌칙 등의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상담, 교육, 계발 활동조차 노력 의무에 불과하다는 것으로는 역시 실효성이 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협회는 적어도 위의 여러 부분에 대한 수정에 관하여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여 증오언설의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률을 이번 국회가 성립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본 법률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첫걸음에 불과하다. 우리 협회는 여야당, 정부·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 더욱 실효적인 조치, 입법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6 년 4 월 14 일
재일코리아안변호사협회